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9. 26 선고 2023가합403874 판결 [보증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8. 29.

판 결 선 고 2023. 9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D호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소외 E은 2021. 1. 5.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5,000만 원,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23. 2. 22.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위 임대차보증금 5억 5,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2. 8. 16.경 위 E 및 피고와 합의하여 임대인인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을 다시 체결하였다.

라.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3. 3. 8. 주택임차권등기명령(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카임3047)을 받아 2023. 3. 14.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3. 3. 24.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.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용신, 판사 오상혁, 판사 이희경